

예산총칙

2007년도 [2회추경]

* 제1조 : 2007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 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세입·세출 예산 총액	일시 차입 한도액
총 계	1,164,478,829	34,934,365
일반회계	842,369,915	25,271,097
특별회계	322,108,914	9,663,267
소 계	177,898,636	5,336,959
기타특별회계		
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	35,585	1,068
의 료 보 호 기 금 운 영 특 별 회 계	3,216,389	96,492
영 세 민 생 활 안 정 기 금 운 영 특 별 회 계	1,115,000	33,450
장 기 미 집 행 특 별 회 계	1,000,000	30,000
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	6,907,000	207,210
도 시 기 반 시 설 특 별 회 계	2,400,000	72,000
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	34,096,501	1,022,895
도 시 철 도 특 별 회 계	129,128,161	3,873,845
공 기 업 소 계	144,210,278	4,326,308
공 기 업		
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	65,137,899	1,954,137
하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	79,072,379	2,372,171

* 제2조 :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‘세입·세출예산’ 과 같다. 다만 각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으로 한다.

* 제3조 : 2007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‘채무부담행위조서’ 와 같다.

* 제4조 : 2007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**42,300,000천원**으로 한다.

* 제5조 :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‘명시이월사업조서’ 와 같다.

* 제6조 : 2007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‘계속비조서’ 와 같다.

* 제7조 : 일반회계 예비비는 **71,706,239천원**으로 한다.

* 제8조 :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.